

청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71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2019. 11. 18. 접수 제20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평균,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을 상대로 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12,128,93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내려진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20차전7)이 확정된 사실, E은 2019. 11. 14. 전에 피고의 통장에서 19,000,000원을 허락 없이 인출하였고, 이에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후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E이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이 하나카드 이용대금 채무(4,470,000원 상당)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한 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피고는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데, 피고의 채권이 진정한 것이더라도 위와 같은 대물변제로 인해 피고만이 채권의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 공동담보가 감소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위 추정을 번복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